

2025년도 국비유학생(일반, 꿈나래, 기술·기능인) 선발시험 공고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I.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

전형	선발분야			인원	유학국가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 전공분야			
일반 전형	지역 연구	개별국가 및 지역연구	개별국가 및 지역의 국제관계,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교육, 어문학 등 지역연구 전 분야	전공분야별 3명 이내 총 6명 내외	아시아 국가(중국 제외)	
			러시아·CIS국가· 유럽(영국 제외)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 어학,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2명 내외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미국 제외)·오세아니아	
	소계			8명 내외		
	기초 학문 연구	인문과학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과학 연구 전 분야	3명	유학대상국 제한 없음 (중국 제외)	
		사회과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연구 전 분야	4명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 연구 전 분야	3명		
	첨단 산업 연구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자율주행차, 스마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전공분야별 3명 내외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공지능, 혁신신약 등			
		첨단부품·소재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첨단부품개발 등			
		디지털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융합 기술 등			
		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친환경 기술 등			
	소계			16명 내외		
	일반전형 계			34명 내외		
	꿈나래 전형	일반전형의 전 분야				17명 내외
기술·기능인 전형	일반전형의 전 분야			4명 내외		일반전형 각 연구분야 유학국가와 같음
합 계				55명 내외		

- ☞ **세부전공은 제한이 없으며**, 전공분야 내에서 세부전공과 유사한 분야 응시 가능(예체능 포함)
- ☞ **학위(석사, 박사) 취득과정만 응시 가능**(자격취득과정은 지원 불가)
- ☞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 등에 따라 본 공고 내 선발인원(계획) 대비 변동 가능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중점 지원 언어(25개)에 한하여 선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총25개어)

II.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5년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 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위 공통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추가사항 1_일반전형, 꿈나래 전형】

1.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시험명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외국어		시험명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영어	프랑스어	TOEFL(IBT)	93점 이상	DELF/DALF	DELF B1 이상	FLEX	701점 이상				
		NEW TEPS	355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IELTS	6.0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FLEX	651점 이상	TEST-DAF	TDN-3 이상							
	TOEIC	82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일본어	스페인어	JLPT	N2 100점 이상	DELE	B2 7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JPT			740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중국어	러시아어	HSK	5급 180점 이상	TORFL	1단계 이상	FLEX	701점 이상				
		FLEX	70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함
-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 TEST-DAF는 성적표에 전체영역에 대한 종합점수 없이 각 영역별 개별점수만 나오므로, 각 개별영역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2025. 5. 24.(토) 시행(74회차)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3. 꿈나래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6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90%이하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등급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4.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특수외국어 언어전문가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중점 지원 언어(25개) 중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전공 선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국가 제한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사업 중점 지원 언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총25개어)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시험명		응시 가능 기준 점수
외국어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능력평가*	810점 이상
	OPI	AL (Advanced Low) 등급 이상

*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시험으로 한국외대 FLEX 센터에서 시행함(접수사이트: <http://flexcfl.hufs.ac.kr>, 접수기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한국외대 졸업자격시험 FLEX는 Pass/Fail을 구분하는 용도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없음

【추가사항 2_기술·기능인 전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 2025. 5. 24.(토) 시행(74회차)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4.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서류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영어	TOEFL(IBT) : 48점 이상 / IELTS : 4.0점 이상 / TOEIC : 396점 이상 / NEW TEPS : 207점 이상
일본어	JLPT : N5 이상 / JPT : 396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검정시험 : Goethe-Zertifikat A1 4등급 이상
프랑스어	델프(DELF), 달프(DALF) : DELF A1 이상 / 딜프(DILF) : 등급이 없는 인증시험이고 국외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중국어	HSK : 2급 이상

◦ 위의 표에 제시된 점수는 응시 가능한 최저 점수이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심사 점수가 상이함

5.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추가사항 1_일반전형, 꿈나래 전형】 4.(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과 동일, 단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점수는 하단의 기준표 기준

[특수외국어 분야 시험 성적 기준표]

외국어	외국어 시험명과 응시가능 기준점수
특수외국어	특수외국어능력평가* 310점 이상 / OPI IL (Intermediate Low) 등급 이상

* 특수외국어능력평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한 시험으로 한국외대 FLEX 센터에서 시행함(접수사이트: <http://flexcfi.hufs.ac.kr>, 접수기간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

6.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기능장 이상 등 자격 소지자, 국비유학 예정 학위과정에 대한 입학허가서 선 취득·제출자 우대

Ⅲ.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 중인 사람

※ 중국지역 유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IV. 선발시험의 과목 및 방법

구분	방법	평가항목	배점(점)	합격자 선정 기준
1차 시험	서류 심사	외국어 시험 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
		국사 시험 성적	20	
		학업 성적	20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20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합계	100		
2차 시험	면접 시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0	
	합계	100		

*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시험위원회에서 분야별 합격자 결정은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 현황 및 응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대학원 성적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V.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온라인 사전설명회 : '25. 4. 9.(수) 15:00

☞ 「국립국제교육원 NIIED」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 예정

♣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niied_official/streams

2.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25. 5. 9.(금) 11:00 ~ 5. 23.(금) 12:00까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속

3. 서류 등기우편 제출 : '25. 5. 27.(화) 도착분까지 접수(등기우편 외 접수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4회차 성적표는 별도로 6.5.(목) 17:00까지 메일(kscholar@korea.kr)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서류 누락자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1차 서류심사 예정일 : '25. 6. 14.(토)

5.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5. 6. 20.(금) 16:00 이후

6. 2차 면접시험 : '25. 7. 11.(금)

7. 최종 합격자 발표 : '25. 7. 18.(금) 16:00 이후

8. 합격자 사전 교육 : '25. 7. 25.(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VI.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 출력 및 날인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나. 접수기간

- 1)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기간 : '24. 5. 9.(금) 11:00 ~ 5. 23.(금) 12:00까지

※ 상기 기간에만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입력 가능*

* 시스템 내 입력 후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

- 2) 응시원서 등기우편 제출기한 : '25. 5. 27.(화) 도착분까지만 접수

※ 시스템에서 응시원서 출력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등기우편 이외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서비스 등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 ☞ 서류 도착여부는 안내가 불가하니,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다. 우편 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4층 국제장학센터
국내인재지원팀 국비유학 담당자 앞(우편번호 13557)

라. 유의사항

- 1)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V”, “VI” 등 접수 관련 내용 등을 참고)
- 2) 우편물 겹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 3)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하였더라도 응시원서에 기재한 5개 유학대상기관에서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
- 4) 직장인의 경우 소속 기관(직장)의 유학 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함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이하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등기우편 제출(바인더 편철 금지)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1】

② 응시원서 【서식 2】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 * 응시원서 출력 후 II.응시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학사)의 직인을 사진 위 및 응시원서 하단에 날인(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직인 날인 생략)
- 사진(image file)은 최근 6개월내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분야는 공고문 내 'I.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을 참고하여 작성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90.88)를 기재하고, 편입학한 자의 경우는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 기재

- 유학대상국가 1개, 유학 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일반꿈나래 전형의 경우, 입학허가 취득여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입학허가 미취득에 따른 유학기관 변경 불인정
- 병력사항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③ 대학졸업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위증명서)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졸업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학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
-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25. 8월말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만 해당)

④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필수 제출
- 전역예정인 경우에도 병적증명서 필수이며,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⑤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또는 이후) 발급된 것 제출
- 성적증명서에 백분율 표시가 없을 경우, 요청하여 기재 받아 제출
- GPA(100점 만점 환산 평균성적), 평균평점, 취득학점합계, 이수교과목 현황(과목별 학점과 성적 포함) 모두 기재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수학하였던 모든 학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

⑥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생년월일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⑦ 추천서 【서식 3】

- 추천인은 'II.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 또는 'II.응시 자격 - [공통사항] -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응시하려는 세부 전공 분야와 연관된 전공 교수 등
- 추천서는 2쪽 이내(별지 포함) 작성
 - ☞ 일반전형 및 꿈나래 전형은 추천서 제출 여부 선택 가능(필수 사항 아님)
 - ☞ 독학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기술·기능인 전형은 추천서 미제출

⑧ 외국어 시험 성적표

- ☞ 유학대상국의 상용어 또는 영어 성적 제출(택1)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기술·기능인 전형 4급) 이상 필수 제출

- '25.5.24.(토) 시행(제74회) 시험까지 인정(해당 성적표는 반드시 6.5.(목) 17:00까지 이메일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⑩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서식 4】 및 증빙서류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내외)을 작성하여 첨부

-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 대외활동 실적의 예시
 - 일반전형, 꿈나래 전형: i) 학업관련 탐구활동(연구활동 실적, 수상, 학회, 세미나 등)
 - ii) 진로탐색 체험활동(진로탐색 관련 동아리, 자격증, 인증서 등)
 - iii)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학생회 등)
 - 기술·기능인 전형: i) 직무성과(현장 경력 및 주요 활동 사항 등)
 - ii) 자격증, 수상경력 및 관련활동(자격증, 기능장, 업무 관련 정부 사업 참여 경력 등)
 - iii) 공동체 기여활동(봉사활동, 사회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⑪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5】

-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국외수학 계획서(별지) 4쪽 이내, 자기소개서(별지) 2쪽 이내 작성)

⑫ [대학원 졸업자만 해당]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외수학 계획서 등에 대학원 기재 시 필수 제출

⑬ [꿈나래 전형 응시자만 해당] 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90%이하인 자·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 ☞ 기준중위소득분위 90%이하인 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납입분('24.5월~'25.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제출
-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진단서(장애와 관련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⑭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서식 6】,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재직경력표(⑪)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모두 제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유학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단, 유학기관 입학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해당자에 한함)

⑮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서식 7】 ☞반드시 자필 서명

⑯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반드시 자필 서명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원본 서류의 반환이 꼭 필요한 경우(예: 상장, 외국어 성적표 원본 등)에는 별도로 반환 신청이 가능함 【서식 9】
- 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한 후 집계를 사용하여 흩어지지 않게 묶어 제출(바인더, 서류철 등 이용한 편철 금지)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 ※ 특히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등 누락 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A4 1매 내외 요약본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서명은 전자서명 불인정, 반드시 자필 서명,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미제출로 처리됨(별도 안내하지 않음))**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 후에는 합격 취소)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5. 6. 20.(금) 16:00 이후
-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3. 2차 면접시험

- 가. 일자 및 장소 : '25. 7. 11.(금) 국립국제교육원
- 나.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 ☞ 면접시간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4. 최종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5. 7. 18.(금) 16:00 이후
-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5. 합격자 교육 : '25. 7. 25.(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함
 - ☞ 교육 불참에 따른 세부사항 미숙지·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 집합교육 예정으로, 정부 지침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 있음
-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VII. 유의사항 ☞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부정행위 예시 >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면접실 입장 시 허용물품 이외 소지 금지)
-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Ⅷ. 장학금 및 출국항공료 지급

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내에서 학비와 체재비로 구분하고 국가별 차등 지급

* 기준액: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및 꿈나래 전형 USD 50,000

나. 장학금은 석사과정 최대 2년 이내, 박사과정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유학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일반전형 최대 2년 이내 지원하고,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은 석사과정 최대 2년 이내 및 박사과정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 지원

다. 장학금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라.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유학기간 등을 고려해, 체재비 우선 지급(6개월 단위) 후, 학비는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학기별(1학기 6개월 기준) 실비로 지급

※ 개인별 국비유학 인정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실지급액은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정산 및 환수 실시)

※ 국비유학 학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해당기간(연)별로 연 기준액을 초과하는 실제 소요학비금액은 미지급

- 체재비는 지급기준액* 내에서 국가별로 산정한 연간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 지급 기준국(미국) 연간 최대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및 꿈나래 전형 USD 30,000

-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수업료, 등록비, 보험료)을 증빙자료(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로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내에서 인정항목·금액 검토 및 지급

-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기준 지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하고, 당해 학기·연도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마.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단위(주기)·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사정과 환율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국비유학생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아.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국비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 지급

자. 국고 또는 장학재단 등에 의한 국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금지(우리원과 타 장학재단 장학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시험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교육조교수당·연구조교수당·기타연구(보조)원수당 등 근로대가성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 지원,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 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등

- 차. 마지막 회차의 장학금은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선발 당시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 카.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유학대학 온라인 수강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국내)체재비는 국가별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50% 감액하여 우선 지급(6개월 단위)하고, 학비는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내에서 유학기관 납부 금액을 확인·검토하여 인정된 금액만큼 학기별(한 학기 6개월 기준) 실비 지급

※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 시 체재비 지급방법(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50% ÷ 12개월 ×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② 체재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별표 1) × 50% ÷ 12개월 ÷ 30일 × 국비유학기간 중 국내 체류 1개월 미만의 일수(출국일 제외)(국의 체류 수학기간의 체재비 지급액에 포함시킴)*

* 국내체류 온라인 수학기간: 입학일로부터 국내 체류 온라인 수학기간(방학기간 포함)

☞ 구체적인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기간 등은 [붙임2] 참조

2. 출국항공료 지원 (※ 귀국항공료는 미지급)

- 가. 국비유학을 위한 출국항공료를 이코노미 기본석 기준금액으로 1회 지급
- 나. 국비유학생 개인 구매 후 청구
- 다. 출국항공료는 국비유학 확정신고 및 출국하여 현지 공관에 도착신고한 이후 지급

IX. 시험합격의 효력 및 유학국 등 변경

1. '26년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 상실

* 국비유학 확정 신청 시 제출서류: 입학허가서(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서약서(공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해당자),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 합격자 어학연수 증명서류(해당자) 등

2. 유학대상국, 유학기관, 연구분야(세부 전공분야), 학위과정 변경 등 불인정

☞ 응시원서 상의 유학대상기관 불합격 및 전공분야 지도교수 부재에 따른 변경도 불인정함

X. 기타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의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4. 유학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5. 문의처 : kscholar@korea.kr * 공고에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확인 필수

※ 본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시 ☎ 02-3668-1460, ☎ 02-3668-1374~5 으로 문의 바랍니다.

XI. 2026년 예고사항

□ (응시자격) 1차(서류심사) 시험과목 '외국어 시험 성적' 평가 대상으로 인정한 공인외국어시험 중 'IELTS'의 국비유학 응시 가능 기준(최저) 성적 조정

◦ (일반/꿈나래 전형) 'IELTS' 성적 국비유학 응시 가능 기준(최저)점수 상향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일반/꿈나래 전형 응시자의 'IELTS' 성적 기준(최저)점수 조정

☞ 조정 내역 : (2025년) 6점 → (2026년부터) 6.5점

◦ (기술기능인 전형) 규정 및 특수성을 고려해 2025년 최저점수(4점) 유지

[붙임] 1.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기준중위소득분위 90%이하)

2.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별지] 서식 1.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2.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3. 추천서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9.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서류 반환 신청서

붙임 1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기준중위소득분위 90%이하)

□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기준중위소득분위 90%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53,000	76,497	19,780	-
2인	3,540,000	125,973	56,598	127,230
3인	4,523,000	161,021	99,951	162,833
4인	5,488,000	196,177	133,680	198,905
5인	6,398,000	229,454	167,069	232,948
6인	7,259,000	261,360	208,471	266,302
7인	8,090,000	288,617	243,019	295,134
8인	8,921,000	320,322	280,625	330,765
9인	9,753,000	354,964	320,449	369,517
10인	10,584,000	386,684	357,963	407,092

□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5.1월) 참조
 - ※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3.545%, 지역가입자는 최소납부액 19,780원 적용
- 기준중위소득분위 90%이하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가구원(신청자, 부모, 배우자 등)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신청자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모두 제출
 - 신청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제자매의 납부 실적까지 제출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 기준으로 함

붙임 2 | 국비유학 국가별 장학금 지급기준(연간 최대 지급기준액)

① 국비유학 일반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20,000	20,000	40,000
아르헨티나	20,000	9,520	29,520
호주	17,682	10,038	27,720
벨기에	20,000	8,440	28,440
브라질	20,000	5,920	25,920
불가리아	17,492	10,228	27,720
캐나다	18,077	10,003	28,080
칠레	20,000	4,840	24,840
중국	18,964	13,436	32,400
필리핀	20,000	8,800	28,800
체코	17,492	11,668	29,160
덴마크	20,000	14,560	34,560
이집트	20,000	6,280	26,280
핀란드	20,000	8,440	28,440
프랑스	20,000	9,880	29,880
독일	20,000	6,640	26,640
가나	20,000	9,520	29,520
헝가리	17,492	12,748	30,240
인도	20,000	8,440	28,440
인도네시아	20,000	7,360	27,360
이탈리아	20,000	4,840	24,840
일본	16,538	14,782	31,320
요르단	20,000	7,000	27,000
케냐	20,000	9,160	29,160
레바논	20,000	9,160	29,160
말레이시아	20,000	10,960	30,960
멕시코	20,000	9,520	29,520
몽골	20,000	8,440	28,440
네덜란드	20,000	8,440	28,440
뉴질랜드	20,000	13,840	33,840*
노르웨이	16,976	11,464	28,440
폴란드	17,492	10,588	28,080
카타르	20,000	10,960	30,960
루마니아	17,492	9,868	27,360
러시아	20,000	8,800	28,800
싱가포르	20,000	14,920	34,920
남아프리카공화국	20,000	5,920	25,920
스페인	19,819	5,741	25,560
스웨덴	17,752	9,608	27,360
스위스	20,000	15,640	35,640
태국	20,000	8,440	28,440
튀니지	19,250	7,390	26,640
터키	20,000	7,720	27,720
영국	20,000	14,920	34,920
베트남	20,000	7,360	27,360
오스트리아	20,000	9,520	29,520
이란	19,250	8,470	27,720
홍콩	20,000	20,000	40,000**
캄보디아	20,000	7,360	27,360

② 국비유학 꿈나래 전형 장학금(최대 지급기준액)

(단위: USD)

국가	연간 국가별 장학금 총액(최대 지급기준액) 내역		
	체재비	학비	장학금(총액)
미국	30,000	20,000	50,000
아르헨티나	30,000	6,900	36,900
호주	27,682	6,968	34,650
벨기에	30,000	5,550	35,550
브라질	30,000	2,400	32,400
불가리아	27,492	7,158	34,650
캐나다	28,077	7,023	35,100
칠레	30,000	1,050	31,050
중국	28,964	11,536	40,500
필리핀	30,000	6,000	36,000
체코	27,492	8,958	36,450
덴마크	30,000	13,200	43,200
이집트	30,000	2,850	32,850
핀란드	30,000	5,550	35,550
프랑스	30,000	7,350	37,350
독일	30,000	3,300	33,300
가나	30,000	6,900	36,900
헝가리	27,492	10,308	37,800
인도	30,000	5,550	35,550
인도네시아	30,000	4,200	34,200
이탈리아	30,000	1,050	31,050
일본	26,538	12,612	39,150
요르단	30,000	3,750	33,750
케냐	30,000	6,450	36,450
레바논	30,000	6,450	36,450
말레이시아	30,000	8,700	38,700
멕시코	30,000	6,900	36,900
몽골	30,000	5,550	35,550
네덜란드	30,000	5,550	35,550
뉴질랜드	30,000	12,300	42,300*
노르웨이	26,976	8,574	35,550
폴란드	27,492	7,608	35,100
카타르	30,000	8,700	38,700
루마니아	27,492	6,708	34,200
러시아	30,000	6,000	36,000
싱가포르	30,000	13,650	43,650
남아프리카공화국	30,000	2,400	32,400
스페인	29,819	2,131	31,950
스웨덴	27,752	6,448	34,200
스위스	30,000	14,550	44,550
태국	30,000	5,550	35,550
튀니지	29,250	4,050	33,300
터키	30,000	4,650	34,650
영국	30,000	13,650	43,650
베트남	30,000	4,200	34,200
오스트리아	30,000	6,900	36,900
이란	29,250	5,400	34,650
홍콩	30,000	20,000	50,000**
캄보디아	30,000	4,200	34,200

* 뉴질랜드는 2024년 UN(생계비)지수를 발표하지 않아, 직전년도와 동일한 지수 반영

** 홍콩은 당초 산출결과금액이 장학금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을 초과함에 따라 기준액으로 조정

[국비유학 장학금 관련 세부 내용(1,2 공통)]

- 1) 장학금 항목은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이내에서 체재비와 학비로 구분
- 2) 장학금 총액은 지급 기준국(미국) 외 기타국가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각국 UN지수(2024. 12월 기준)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 장학금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40,000, 꿈나래 전형 USD 50,000
- 3) 장학금 중 체재비는 지급기준액*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7급 기준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 산정
 - * 체재비 미국 연간 최대지급액(상한액): 일반/기술·기능인 전형 USD 20,000, 꿈나래 전형 USD 30,000
- 4) 학비는 유학기관 실제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2개 학기분)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
- 5)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6) 최대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석사과정 2년 이내, 박사과정 3년 이내로 하여 지급
 -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반전형 최대 2년 내 지원, 기술·기능인/꿈나래 전형은 석사 최대 2년 및 박사에 한하여 최대 3년 내 지원
- 7) 모든 '연간' 기준은 수혜 기준임(예시 : '25-1학기 재학, '25-2학기 휴학, '26-1학기 복학한 경우 '25-1학기'와 '26-1학기'를 '연간'으로 판단)
- 8) 장학금 지급은 체재비와 학비 각각 학기별(6개월 단위) 분할지급. 체재비 우선 지원(학기별(6개월 단위)) 후, 국가별 연간 장학금 최대지급액에서 연간 체재비 최대지급액을 차감하고 남은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학비를 학기별 실비로 지급
 - 장학금(체재비, 학비) 실제 지급 시 지급기준액·기간 내에서 개별 유학(연수)기간 등을 반영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함에 따라, 지급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 (예) 학위를 당초 국비유학 확정기간보다 조기 취득한 경우 국비유학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지원. 만일 미지원 대상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선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장학금(체재비 등)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국비유학기간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계산
- 9) 학비는 유학기관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인정하며, 유학기관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 금액이 확인된 항목을 토대로 국립국제교육원의 검토 하에 지원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증빙 제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만큼 인정됨. 학비 국가별 연간 최대 지급기준액은 2개 학기분으로, 국비유학 시작학기부터 2개 학기를 1년으로 정하여, 국비유학생이 인정받은 학비금액 중 해당기간(연)별로 학비 연 기준액 초과분은 미지급하고, 당해기간(1년(2개 학기)) 이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지 않음
- 10)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자가 유학기관 입학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 시 어학연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가능. 총 국비유학기간은 어학연수기간과 학위과정(석사 최대 2년, 박사 최대 3년 지원)을 합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
 - * 지급액(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①체재비(●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12개월×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개월수 + ●체재비 국가별 연간 최대지급액÷30일×어학연수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일수) + ②학비(연간 국가별 장학금 최대 지급기준액에서 체재비 최대 지급기준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 인정금액만큼 지급)
- 11)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직전학기 성적이 60% 미만)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체재비 및 학비) 지급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장학금 미수혜 후 해당 국비유학생의 국비유학기간 총지급(최대)기준액 중 미수혜 학기분 장학금만큼 차감. 체재비 및 학비 선지급(직전학기 성적 결과 제출 이전) 후 성적 기준 미달 등 장학금 미수혜 요건 해당사항 발생 시 장학금 지급기준 준용하여 해당 금액만큼(기지급된 장학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조치 및 필요 시 국비유학생 자격 취소 가능

☞ 기타 상세 내용은 2025년도 국비유학·국비연수생 선발·파견 관리 업무처리지침 참고

【서식 1】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가능인 전형	본인 제출서류 (※ 제출 시 서명 날인)
1	[서식 2]응시원서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출력	●	●	●	
2	응시원서 하단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정부수입인지 추가 제출)	●	●	●	
3	대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4	병적증명서(※ 남자는 필수 제출)	●	●	●	
5	대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6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	●	●	
7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	
8	[서식 3] 추천서(※ 별지 포함)	△	△	-	
9	외국어 시험 성적표	●	●	●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	●	
11	[서식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	●	
12	대외활동 증빙서류	●	●	●	
13	[서식 5] 국외수학 계획서 표지	●	●	●	
14	(별지) 국외수학 계획서	●	●	●	
15	(별지) 자기소개서	●	●	●	
16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대학원 졸업자 필수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	
17	수급권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지원대상자 증빙자료(※ 공고일 이후 발급)	-	●	-	
18	소득분위 확인(기준중위소득 90%이하) 대상자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 공고일 이후 발급)	-	●	-	
19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	
20	[서식 6]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	-	●	
21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	●	
22	전·현직 중소기업 확인서	-	-	●	
23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	
24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등	-	-	△	
25	[서식 7]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	●	●	
26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27	[서식 9] 제출서류 원본서류 반환 신청서	△	△	△	

※ 추천서를 제외한 각종 별지는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 ● 필수, △ 선택, - 해당없음

【서식 2】 반드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입력 후 출력 제출(본 서식은 응시자 참고용)

접수번호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사진 (3cm × 4cm)			
시스템 자동기재											
주소		(집전화) (핸드폰)								사진 위에 대학총장 직인 날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E-mail									
구분	전형별	일반() 꿈나래() 기술기능()			분야	연구 : (예시 : 기초학문연구)					
	과정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 : (예시 : 자연과학)					
						세부전공 : (예시 : 천문학)					
외국어	시행시험명1	시행시험명2		한국사	시행회차	회					
	시행일	시행일		합격등급	급						
	성적	성적		학부 성적①	(백분위점수)	대학원 성적					
				학부 성적②	(편입인 경우)						
유학대상국가				유학대상기관				입학허가 취득 여부			
(1곳만 기재)				제1희망				(예시: 취득 / 미취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학력	~		대학교				대학				
	~		학과 졸업(예정)				(학사)				
	~		대학교				대학원				
~		학과 졸업(예정)				(석사)					
~		대학교				대학원					
~		전공 졸업(예정)				(박사)					
병력	~		①전역 ②전역예정(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병역면제								
경력	~										
	~										
	~										
정부수입인지 (5,000원분) 부착 ※ 행정수수료 납부용 ※ 인터넷으로 발급시 A4로 출력하여 별지로 첨부가능		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개인 정보를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의 응시 자격* 요건에 의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국비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응시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3.7. 대통령령 제33313호] 제21조 1항 1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_____ 대학교총장 직인						_____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 한국사 74회차 응시지는 합격등급 공란으로 제출, 성적표는 6.5(목) 17:00까지 메일(kscholar@korea.kr)로 제출

【서식 3】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추천서

응시자 인적사항

성명 : _____ 분야(세부전공분야) : _____ (예시 : 물리학)

학위구분 : 석사 () 박사 ()

추천인 인적사항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전화 : _____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이메일 : _____

추천 의견

※ 별지 서식 추가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별지 매 장마다 작성일 및 작성자 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기재하여야 함

.....

.....

.....

.....

.....

.....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관련하여 응시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비 유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인 대학 학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추천서(별지)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

작성일 : 2025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수험 번호		성 명		전형구분	일반 () 꿈나래 () 기술기능인 ()		
				학위과정	석사 () 박사 ()		
				선발분야	연구분야	전공분야	세부전공분야

[활동실적 1]

- 주관기관 :
- 활동개요 :
- 활동실적 :
- 증빙서류 :

[활동실적 2]

- 주관기관 :
- 활동개요 :
- 활동실적 :
- 증빙서류 :

[활동실적]

- ※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쪽 까지 작성
- ※ 별지 사용 시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으로 작성

1.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이 제시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위조,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위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 안에 반드시 √(체크) 표시하기 바람

2025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수험 번호		성 명		유학대상국가	
구분	일반 () 꿈나래 () 기술기능인 ()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선발분야 (분야/전공/세부전공)	(예시) 기초학문연구/자연과학/물리학				
유학대상기관 (기관)	제1희망 :				
	제2희망 :				
	제3희망 :				
	제4희망 :				
	제5희망 :				
유학 시 취득할 학위 과정 / 학위명(학위명은 국문, 영문 둘다 표기)	(예시) 박사과정, 철학박사(Ph.D)				
예상 출국 시기 (학기 시작 시기)					
예상되는 국비유학기간					
학업 종료 후 계획					

작성일 : 2025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기재 (서명 또는 날인)

국외수학 계획서(별지)

- ※ 작성 분량 : 4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
-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5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기소개서(별지)

- ※ 작성 분량 : 2쪽 이내 작성(다단 작성 금지, 모든쪽에 작성자 서명)
- ※ 휴면명조, 12pt, 줄간격 160%

작성일 : 2025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025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중소기업 재직 경력표**

연번	기업체명	재직연(年)수	누계	특이사항
	필요시 칸 추가 작성			
중소기업체 재직 기간 총 근무연수				년 월

붙임 재직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의 중소기업 재직 경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5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응시제한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공고 시 안내받은 아래의 응시 제한 사항에 대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또는 향후 귀원이 시행하는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국비유학(연수)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 단, 국비연수생 선발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 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에 유학중인 사람

년 월 일

2025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자 성명 : (인)

【서식 8】

국비유학생 선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국제교육원」은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성적 포함), 경력, 자격증, 언어능력, 취업 상태, 병역 사항 등	국비유학(연수) 장학생 선발 심사	5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꿈나래 전형 지원자만 해당)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지원대상자, 소득분위 90% 이하 여부	꿈나래 전형 응시 자격 적격 여부 심사	3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성명 기재 (서명 또는 인) _____

국립국제교육원장 귀중

【서식 9】

2025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제출서류 원본 반환 신청서

접수 번호		전공 분야		성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반환 요청 서류 목록					
총 개수					